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171호

공 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국가유산청장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예고

2. 예고내용

구분	지정 명칭	비고
공동체종목	사찰음식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

3. 지정사유

- '사찰음식'은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으로, 승려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의례식을 포함하며,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까지 포괄함. 사찰음식은 불교사상에 기초하여 육류와 생선, 오신채 없이 조리하는 채식음식의 특징이 있음.
- 불교가 전래된 이후 사찰음식은 승려들의 수행과 공동체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하였으며, 다양한 기록을 통해 사찰의 장류와 곡식이 구휼에 사용되었고, 사찰이 두부, 메주 등의 주요 공급처로 역할하며 오랜 기간 한국의 식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어져 온 역사성이 확인됨.
- 사찰음식은 육류와 오신채를 배제하고, 발효를 중시하는 독특한 조리법을 통해 한국의 전통음식 문화의 다양성을 제공하며, 불교사상이 음식과 식사법으로 구체화된 사례로서 종교와 음식문화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기여함.
- 이처럼 사찰음식은 무형유산으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등의 가치를 지녀 이를 국가무형 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전하고자 함.
- 사찰음식은 출가 수행자인 승려를 중심으로 사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체계를 이루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종목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함.

4. 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 「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락처 :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 지정심사과

- 전화번호 : 063-280-1638
- 전송번호 : 063-280-1649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무형유산국 지정심사과
- E-mail : dhkim0228@korea.kr